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5일, 정희용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7.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희용 의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하여 종합적, 전략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과 식량안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달린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가능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많은 국민과 농축산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농축산물을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과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협상 과정에서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정희용의원안은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한 경고와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 수호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안 각 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음.

□ 주문 1은 정부가 협상 진행 상황과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협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축산인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주문2는 농축산물을 협상의 양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일부 정부 당국자의 인식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업이 지닌 식량안보적 가치와 농축산인의 생존권을 고려할 때, 정부 당국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농축산계의 불안감과 정책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확고한 보호 의지를 요구하려는 취지로 보임.

주문3은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중장기적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후적 피해보전이 아닌,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려는 것임.

주문4는 농업인 및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국회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농축산업 문제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종합하면, 정희용의원안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책임 있는 협상 자세 견지, 농축산업계와의 투명한 소통 및 농축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하려는 것

으로,

이를 통하여 농업인 및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고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